

## VR기기 및 VR콘텐츠 제작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 질의답변 결과

### □ 질의내용

- 안전교육 전용 VR기기 구매 및 콘텐츠 제작 비용 집행 가능여부

### □ 답변내용

- VR기기가 추락 또는 협착 등 근로자 안전관련 가상체험시스템이면 가능함.  
(단, 근로자 안전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불가)

- 안녕하십니까?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백승희입니다.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- 귀하께서 안전교육을 위한 VR기기 및 VR콘텐츠 구매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,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- 『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』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8호, 2017.2.7.)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  -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, 동 고시 별표2의 사용불가에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  -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
    -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
    - 작업방법 변경,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
    - 환경관리,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
    -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, 복리·후생증진,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
  -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(교육교재, VTR 등 기자재 등)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VR기기와 관련하여 VR기기가 추락 또는 협착 등 근로자 안전관련 가상체험시스템이면 가능할 것이나, 근로자 안전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.
  -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, 마찬가지로 근로자 안전 외에 다른 목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, 다만 사용목적, 안전교육 취지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-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주무관(☎070-4352-6205)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